

공공폐기물 처리업무 추진실태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

◆ 「국조실(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조사 지시(2016.3.21.)」에 따라, 우리부 소속·공공기관에 대한 폐기물처리업무 관련 규정위반 등 조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7개 기관(2012.1.~2015.6.)
- 조사기간 : 2016. 3. ~ 2016. 12.
- 조사방법 : 현장조사 및 기관별 자체조사
- 조사자 : 감사담당관 등 3명
- 조사결과 : 총 93건(공인인증서 불법유출 31건, 직무소홀 등 43건, 처리비용 지급 부적정 4건, 기타 15건) 적발

□ 주요 조사결과

- 폐기물처리용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
 - 담당공무원 등이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에 제공
 - ☞ 「전자서명법」 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 제5항 공인인증서 도용 및 누설금지 위반
- 배출 폐기물 정보처리 직무소홀 및 배출업무 불법 위탁
 - 담당공무원 등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폐기물 배출관련 정보처리(폐기물 물량, 종류 등의 기록)를 폐기물처리업자가 임의로 처리하도록 부당 조치
 - 위탁이 금지된 폐기물 배출 감독업무를 감리업체에 임의로 위탁하고 동 업무 수행에 대한 감독소홀
 -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폐기물 배출감독 직무유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배출자 입력의무 위반

○ 폐기물 처리비용 지급 부적정

- 폐기물 인계일자,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위탁량, 폐기물명, 차량번호 등 인계내역(24건 509톤)이 위변조 되었는데도 확인 없이 처리비용(약 6,371천 원) 지급
- 폐기물 운반차량의 운반시간 고려시 운행횟수(42건 864톤)가 부풀려졌는데도 확인 없이 처리비용(약 22,400천 원) 지급
- 폐기물처리업체가 올바로시스템에 임의로 입력하고 배출내역(9건 160톤)이 확인되지 않은 처리비용(약 18,394천 원) 지급
- 폐기물처리업체가 운반차량의 적재한도를 초과한 물량(5건 59톤)을 청구하였음에도 그대로 처리비용(약 4,524천 원) 지급
- ☞ 「형법」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위작·변작) 및 「동법」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동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방조

○ 기타

-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전 폐기물처리 계획(변경) 미신고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배출자의 신고 등) 폐기물 처리 계획(변경) 신고 미준수
- 폐기물 신규 비목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 미이행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설계변경 계약 미준수
- 폐기물처리업체 미승인 운반차량 운행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록차량 이용 의무 위반
- 폐기물처리 확인의무 관리감독 소홀 계량증명서 등 미확인

□ 조치 계획(안)

- 해당기관에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경고 조치 및 시정요구
 - 엄중경고 5명, 주의 25명, 환수요구 3건, 규정위반 5건(관련업체)
 - ☞ 국조실 회의시(3.23.) 배출물량 15,000톤 미만 현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후 주의, 경고 등 징계(회의자료 적시, 설명)
- 조사결과 국조실(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 제출

[별첨] 기관별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 소속기관

기관명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국립경주박물관	<p>□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박물관은 아래 [표]의 특별전시관 지붕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5항**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누설 또는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안됨 <p style="text-align: center;">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처리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450 810 1414 999"> <thead> <tr> <th rowspan="2">계약명</th> <th rowspan="2">계약업체</th> <th rowspan="2">계약기간</th> <th colspan="2">처리(계약)물량</th> <th rowspan="2">준공(계약)금액(천원)</th> <th rowspan="2">감독공무원</th> </tr> <tr> <th>톤</th> <th>건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특별전시관 지붕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td> <td>ㄱ(주)(운반) (주)ㄴ(처리)</td> <td>2014.10.24. ~12.15.</td> <td>225 (225)</td> <td>12</td> <td>10,278 (10,278)</td> <td rowspan="2">A</td> </tr> <tr> <td>산(운반,처리)</td> <td>2014.11.14. ~12.21.</td> <td>10.2 (10.2)</td> <td>1</td> <td>440 (44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독공무원 A은 2014. 10.경 폐기물처리업체 ㄱ(주) 직원 B에게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복사하여 제공하였고 ID와 PW를 생성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p>□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소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박물관은 위 [표 1]의 특별전시관 지붕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라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함 - 감독공무원 A은 폐기물처리업체 ㄱ(주) B과장에게 부탁하여 총 배출량 235.2톤(13건) 중 225톤(12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라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p>⇒ 관련자 주의 : A</p>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금액(천원)	감독공무원	톤	건수	특별전시관 지붕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ㄱ(주)(운반) (주)ㄴ(처리)	2014.10.24. ~12.15.	225 (225)	12	10,278 (10,278)	A	산(운반,처리)	2014.11.14. ~12.21.	10.2 (10.2)	1	440 (440)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금액(천원)	감독공무원												
		톤	건수																			
특별전시관 지붕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ㄱ(주)(운반) (주)ㄴ(처리)	2014.10.24. ~12.15.	225 (225)	12	10,278 (10,278)	A																
	산(운반,처리)	2014.11.14. ~12.21.	10.2 (10.2)	1	440 (440)																	
국립광주박물관	<p>□ 폐기물처리 계획 신고 등 누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박물관은 아래 [표]의 전시관 정면 중앙계단 친환경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 																					

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 마다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함.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함

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처리현황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 금액(천원)	감독 공무원
			톤	건수		
전시관 정면 중앙계단 친환경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ㄷ	2014.6.20. ~ (지출원인 행위계약)	150 (150)	6	4,100 (4,100)	C

- 감독공무원 C은 폐기물 배출 전 관할청에 폐기물처리계획 신고를 하지 않았고, 건설폐기물 150톤(6건)의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을 누락하였음

□ 폐기물처리 확인의무 관리감독 소홀

- 광주박물관은 위 [표] 의 전시관 정면 중앙계단 친환경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급하여야 하나
- 폐기물 배출물량 150톤(6건)에 대한 계량증명서가 없고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에 폐기물 위탁량이 누락 되었는데도 준공검수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였음

⇒ **관련자 엄중경고 : C**

국립부여박물관

□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

- 부여박물관은 아래 [표] 의 ①~② 2013년 리노베이션공사 등 2건의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5항**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누설 또는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나

*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안됨

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처리현황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 금액(천원)	감독 공무원
			톤	건수		
①2013 리노베이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ㄹ	2013.7.1. ~12.31.	445.69 (431)	36	17,243 (17,243)	D
②2014 리노베이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ㄹ	2014.4.10. ~8.31.	534.53 (271.2)	29	21,788 (17,243)	D

	<p>- 감독공무원 D은 2013. 9. 4.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하여 본인의 개인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사업장을 등록하여 ID와 PW를 생성한 한 후, 2013. 9. 5. 폐기물처리업체 (주)르 직원 E에게 공인인증서를 USB에 복사하여 제공하였고 ID와 PW를 구두로 전달하여 2013. 9.부터 2014. 8.까지 사용하게 하였음</p> <p>□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소홀</p> <p>○ 부여박물관은 위 [표] 의 ①~② 2013년 리노베이션공사 등 2건의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 마다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에도</p> <p>*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함</p> <p>- 감독공무원 D은 폐기물처리업체 (주)르 직원 E에게 부탁하여 ①의 경우 총배출량 445.69톤(36건)을 ②의 경우 총배출량 534.53톤(29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p> <p>□ 폐기물처리 변경계획 신고 누락</p> <p>○ 부여박물관은 위 [표] 의 ② 2014년 리노베이션공사 폐기물처리용역사업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1*에 따라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에도</p> <p>*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함</p> <p>- 감독공무원 D은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2014. 4. 14.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신고 당시 271톤에서 534톤으로 97%가 증가하였는데도 관할청에 변경신고를 누락하였음</p> <p>⇒ 관련자 주의 : D</p>
<p>국립대구박물관</p>	<p>□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p> <p>○ 대구박물관은 아래 [표] 의 옥외복문 화장실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5항**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누설 또는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나</p> <p>*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p> <p>**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안됨</p>

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처리현황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 금액(천원)	감독 공무원
			톤	건수		
옥외복문 화장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	2012.4.9. ~준공시	214.08 (175.02)	9	5,450 (4,800)	F

- 감독공무원 F은 2012. 4. 16. 폐기물처리업체 (주)□ 직원 G에게 개인명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복사하여 제공하였고 ID와 PW를 생성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소홀

- 대구박물관은 위 [표] 의 옥외복문 화장실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에도
 -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함
- 감독공무원 F은 폐기물처리업체 (주)□ 직원 G에게 부탁하여 총 배출량 214.08톤(9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관련자 주의 : F

국립김해박물관

□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소홀

- 김해박물관은 아래 [표 1] 의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마다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에도
 -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함

표 1.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계약 및 처리 현황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 금액(천원)	감독 공무원
			톤	건수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사(운반) ㅂ(주(처리))	2012.11.1. ~12.10.	102.55 (103.348)	8	7,920 (7,920)	H

- 감독공무원 H는 폐기물처리업체 ㅂ(주 직원 AAM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102.55톤(8건)을 휴대전화를 이용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폐기물 처리비용 지급 부적정

- 김해박물관은 위 [표 1] 의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업체 사에서 건설폐기물 총 102톤 (8건)

을 처리하면서 아래 [표 2] 와 같이 운반차량 적재용량 보다 처리물량이 과다하게 개근된 물량을 청구하였으나

표 2.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적재용량 및 처리물량 비교

(단위 : 톤)

순번	배출일자	차량번호	①처리물량	②적재용량	차이(①-②)	비고
1	2012.11.27.	경남80모****	13.98	5	8.94	화물소형
2	"	"	15.33	5	10.33	"
3	"	경남97더****	15.25	24	-	화물대형
4	"	"	13.56	24	-	"
5	"	90도****	1.06	1	-	화물소형
6	"	"	13.65	1	12.65	"
7	"	"	16.22	1	15.22	"
8	"	"	13.5	1	12.5	"
계			102.55		59.64	

※ 적재용량은 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허가번호 제 건설수집-18호, 2010.6.15.) 및 자동차등록 원부(2016.10.20.) 확인/ 김해시장

※ 과다청구비용(5건 59.64톤) : 4,524,444원(처리비용 3,568,320원, 운반비 444,258원, 상차비 100,553원, 부가세 411,313원)

- 감독공무원 H는 준공처리 과정에서 배출자 인계내역, 계량증명서, 운반차량 적재용량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청구된 물량 59.64톤(5건)을 인정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약 4,524천 원)을 지급하였음

- 또한 아래 [표 3] 의 지정폐기물인 석면폐재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2 제1항*에 따라 별도로 분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해야 하고, 폐기물 처리물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정산을 하여 처리비용을 지급해야 함에도

* 지정폐기물(폐석면 20kg이상)은 지정폐기물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해야 함

표 3.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정산내역

(단위 : 톤, 원)

구분	계약내역			정산내역			비고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페콘크리트	1.062	14,954	15,881	1.060	14,954	15,881	
혼합건설폐기물	101.317	59,831	6,061,897	101.490	59,831	6,061,897	
건축폐자류	0.554	23,408	12,968	0	0	0	
석면폐재류	0.415	418,485	173,671	0	0	0	
운반비	102.933	7,449	766,747	102.550	7,449	763,894	
상차비	102.933	1,686	173,545	102.550	1,686	172,899	
소계			7,204,709			7,014,571	
부가세			720,470			701,457	
총계			7,920,000			7,710,000	차액 210,000

- 감독공무원 H는 위 [표 3] 의 석면폐재류(0.415톤)를 별도로 분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혼합폐기물로 처리*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물량이 0.383톤(102.933톤→102.55톤)으로 감소하였는데도 운반비, 상차비를 감액(210천 원)하지 않고 처리비용을 지급하였음

* 감독공무원 H는 계약된 석면폐재류를 인지하지 못하고 처리하였다고 진술함

⇒ **관련자 엄중경고** : H

관련업체 : S(김해시청 폐업신고 수리, 2013.1.21.)

□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소홀

- 국립국악원은 아래 [표]의 ①~③ 수해복구 및 재난방지 시설 공사 등 3건의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 마다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르게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에도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함

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처리현황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 금액(천원)	감독 공무원
			톤	건수		
①수해복구 및 재난방지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	2011.12.19. ~2012.5.16.	491.83 (483)	23	8,500 (8,500)	I
②예약당 측면 보도철거 폐기물처리용역	○(주)	2013.1.29. ~4.25.	135.44 (120)	7	3,470 (3,470)	K
③청사 내부 포장도로 보수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S(운반) 처(주)처리	2013.3.14. ~4.12.	250.12 (249.22)	11	5,000 (5,000)	I

국립국악원

- ①의 경우 감독공무원 I은 폐기물처리업체 ○(주) 직원 J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491.83톤(23건)을 배출사업장 등록 후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②의 경우 감독공무원 K는 폐기물처리업체 ○(주) 직원 J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135.44톤(7건) 중 73.33톤(4건)을 휴대전화를 이용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61.11톤(3건)은 입력이 누락됨
- ③의 경우 감독공무원 I은 폐기물처리업체 (주)S 직원 L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250.12톤(11건)을 휴대전화를 이용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관련자 주의** : I, K(현 관광정책실 ☎☎☎☎과)

□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소홀

- 남도국악원은 아래 [표]의 강습장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 마다

국립남도국악원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에도

-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함
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처리현황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 금액(천원)	감독 공무원
			톤	건수		
강습장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유)ㄷ(운반) (유)ㅋ(처리)	2012.4.23. ~12.24.	139.62 (136)	8	4,168 (4,168)	M

※ 운반차량 인계내역에 인계자명이 (유)ㅋ 직원 N로 확인됨

- 감독공무원 M은 폐기물처리업체 (유)ㅋ 직원 N에게 부탁하여 총 배출량 139.62톤(8건)을 휴대폰을 이용 배출사업장 등록 후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또한 2012. 12. 20. (유)ㅋ에서 제출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확인서의 운반차량 전남06바7070 23.36톤(3건)*의 반입량은 개근을 하지 않고 임의로 입력하여 처리하였음

* 운반차량 3건의 상차시간이 16시 34분으로 동일함

⇒ **관련자 주의** : M(현 국립Å Å Å Å Å Å Å)

□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소홀

- 국립중앙극장은 아래 [표 1] 의 ①~② 별관옥상 환경개선공사 등 2건의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 마다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에도

-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함
표 1.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처리현황

국립중앙극장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 금액(천원)	감독 공무원
			톤	건수		
①별관옥상 환경개선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ㅍ(운반) (주)ㄱ(처리)	2013.5.1. ~6.30.	472.36 (470.3)	21	16,028 (16,028)	O
②달오름극장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ㅎ	2013.5.9. ~12.23.	2,189.85 (2,189.85)	111	70,535 (70,535)	Q

- ①의 경우 감독공무원 O은 폐기물처리업체 (주)ㅍ 직원 P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472.36톤(21건)을 휴대전화를 이용 배출사업장 등록 후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②의 경우 감독공무원 Q는 감리용역 계약*에 따라 상주감리원 R이 폐기물처리업체 ㅎ(주) 직원 S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2,189.85톤(111건)을 휴대전화를 이용 배출사업장 등록 후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과업수행 지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무를 (주)중합건축사 가람건축에 감독업무를 대행하였고, 상주감리원 R이 폐기물처리 감독업무를 대행하였다고 진술함

□ 폐기물처리업체 미승인 운반차량 운행

○ ΓL(주)은 아래 [표 2] 의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공사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운반차량은 배출현장의 시군구 허가를 득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나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운반차량에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유효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표 2.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처리현황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금액(천원)	감독공무원
			톤	건수		
전속단체 공연연습장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ΓL	2013.5.1. ~2016.10.31.	2951.62 (4,105.5)	125	진행중 (78,926)	T

※ 2015. 6. 30.까지 폐기물 처리물량 및 처리 건수임

- 2015. 11. 5. 폐기물을 운반하면서 충북06노7111 차량 1대 1건의 미승인 운반차량을 운행하였음

⇒ 관련자 주의 : O, Q

관련업체 위반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ΓL(주)

□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

○ 아시아문화전당은 아래 [표 1] 의 ①, ②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등 2건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5항**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누설 또는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나

*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안됨

표 1.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처리현황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금액(천원)	감독공무원
			톤	건수		
①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주)ΓC	2012.1.1. ~2015.10.31.	56,285 (49,472)	2,498	계속 (4,058,070)	U,V,W
②아시아창작스튜디오 부대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ΓM(주)	2015.3.18. ~8.15.	4,559 (2,618)	209	91,149 (53,303)	X
③아시아문화창작공간 내부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주)ΓB	2013.7.19. ~2014.2.21.	1,792 (1,122)	105	51,336 (20,158)	X

※ ① 2012.1.1.부터 2015.6.30.까지 처리물량 및 처리건수임

- ①의 경우 감독공무원 U는 2012. 2.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이메일로 감리업체 (주)ΓC 감리원 Y에게 공유하였고 ID, PW를 구두로 제공하였으며, Y는 폐기물처리업체 (주)ΓC 직원 Z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 ②의 경우 감독공무원 X은 2015. 1. 22. 개인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사업장을 등록한 후 2015. 4. 15. 폐기물처리업체 ㄱ(주)에 공인인증서를 USB에 복사하여 제공하였고 ID와 PW를 구두로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소홀

- 아시아문화전당은 위 [표 1]의 ①~②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등 2건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 마다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에도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①의 경우 감독공무원 V(2012.4.23.~2014.11.30.), W(2014.12.1.~2015. 6.14.)은 감리업체 (주)ㄱ 감리원 Y에게 부탁하여 폐기물처리업체 ㄱ 직원 Z이 2013. 2. 16.부터 2015. 1. 19.까지 총배출량 56,285톤(2,498건) 중 7,852톤(352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②의 경우 감독공무원 X은 폐기물 배출시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2,372톤, 113건/ 2015.3.31.~2015.4.14.)하였으나, 2015. 4. 15.부터는 폐기물처리업체 ㄱ(주)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4,559톤(209건) 중 2,187톤(96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폐기물처리업체 미승인 운반차량 운행

- (주)ㄱ은 위 [표 1]의 ①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운반차량은 배출현장의 시군구 허가를 득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나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운반차량에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유효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2013. 5. 15.부터 2014. 9. 19.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전남06바**** 차량 등 2대 7건의 미승인 운반차량을 운행하였음

표 2. 미등록 불법차량 이용 현황

순번	배출일자	차량번호	건수	비고
1	2013.5.15.	전남06바****	1	
2	2014.9.22.	전남06나****	3	
3	2011.9.29.	"	3	
계			7	2대

□ 폐기물처리 변경계획 신고 누락

○ 아시아문화전당은 위 [표 1] 의 ①,③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부대 시설공사 등 2건의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1*에 따라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 위 [표 1] ①의 경우 아래 [표 3] 과 같이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2015. 3. 26.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신고 당시 2,618톤에서 4,559톤으로 74%가 증가하였는데도 관할청에 변경신고를 누락하였음

- 위 [표 1] ③의 경우 아래 [표 3] 과 같이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2013. 8. 22.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신고 당시 1,122톤에서 1,792톤으로 59%가 증가하였는데도 관할청에 변경신고를 누락하였음

표 3. 건설폐기물처리 신고 총배출량 대비 변경 총배출량 비교

계약명	신고 총배출량(톤) (1)	변경 총배출량(톤) (2)	증가(톤) (2-1)	증가 비율(%) (2/1)	감독 공무원
아시아창작스튜디오 부대시설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618	4,559	1,941	증 74.1	X
아시아문화창작공간 내부리모 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122	1,792	670	증 59.7	X

⇒ **관련자 주의** : U(현 국립℃℃ ¥¥¥¥), V(현 국립 £ £ ¥¥¥¥), W, X

관련업체 위반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주)ㄱㄷ

□ 소속공공기관

기관명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대한장애인 체육회	<p>□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소홀</p> <p>○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아래 [표] 의 ①~④ 훈련원 진입로 완화차선 설치공사 등 4건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 마다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에도</p> <p>*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처리현황</p> <table border="1" data-bbox="459 824 1407 1153"> <thead> <tr> <th rowspan="2">계약명</th> <th rowspan="2">계약업체</th> <th rowspan="2">계약기간</th> <th colspan="2">처리(계약)물량</th> <th rowspan="2">준공(계약)금액(천원)</th> <th rowspan="2">공사감독</th> </tr> <tr> <th>톤</th> <th>건수</th> </tr> </thead> <tbody> <tr> <td>① 훈련원 진입로 완화차선 설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td> <td>(주)ㄱ사</td> <td>2011.10.17.~ 2012.4.16.</td> <td>811.67 (799)</td> <td>35</td> <td>28,000 (28,000)</td> <td>AA</td> </tr> <tr> <td>② 2단계 훈련시설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td> <td>ㄱㅇ(주)</td> <td>2012.8.10. ~2013.8.5.</td> <td>548.91 (409)</td> <td>29</td> <td>8,314 (8,314)</td> <td>AA</td> </tr> <tr> <td>③ 2단계 교육시설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td> <td>ㄱㅈ(주)</td> <td>2013.9.13. ~2014.11.28</td> <td>161.3 (141)</td> <td>7</td> <td>3,423 (3,423)</td> <td>AA</td> </tr> <tr> <td>④ 2단계 옥외체육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td> <td>ㄱㅊ(주)</td> <td>2015.5.20. ~6.30.</td> <td>600.21 (600)</td> <td>25</td> <td>9,047 (9,047)</td> <td>AA</td> </tr> </tbody> </table> <p>- ①의 경우 공사감독 AA은 폐기물처리업체 (주)ㄱ사 직원 BB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811.67톤(35건)을 휴대전화를 이용 배출사업장 등록 후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p> <p>- ②의 경우 공사감독 AA은 폐기물처리업체 ㄱㅇ(주) 직원 CC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548.91톤(29건)을 휴대전화를 이용 배출사업장 등록 후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p> <p>- ③의 경우 공사감독 AA은 폐기물처리업체 ㄱㅈ(주) 직원 DD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161.3톤(7건)을 휴대전화를 이용 배출사업장 등록 후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p> <p>- ④의 경우 공사감독 AA은 폐기물처리업체 ㄱㅊ(주) 직원 EE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600.21톤(25건)을 휴대전화를 이용 배출사업장 등록 후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p> <p>⇒ 관련자 주의 : AA 차장</p>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금액(천원)	공사감독	톤	건수	① 훈련원 진입로 완화차선 설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주)ㄱ사	2011.10.17.~ 2012.4.16.	811.67 (799)	35	28,000 (28,000)	AA	② 2단계 훈련시설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ㄱㅇ(주)	2012.8.10. ~2013.8.5.	548.91 (409)	29	8,314 (8,314)	AA	③ 2단계 교육시설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ㄱㅈ(주)	2013.9.13. ~2014.11.28	161.3 (141)	7	3,423 (3,423)	AA	④ 2단계 옥외체육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ㄱㅊ(주)	2015.5.20. ~6.30.	600.21 (600)	25	9,047 (9,047)	AA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금액(천원)	공사감독																										
톤		건수																																				
① 훈련원 진입로 완화차선 설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주)ㄱ사	2011.10.17.~ 2012.4.16.	811.67 (799)	35	28,000 (28,000)	AA																																
② 2단계 훈련시설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ㄱㅇ(주)	2012.8.10. ~2013.8.5.	548.91 (409)	29	8,314 (8,314)	AA																																
③ 2단계 교육시설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ㄱㅈ(주)	2013.9.13. ~2014.11.28	161.3 (141)	7	3,423 (3,423)	AA																																
④ 2단계 옥외체육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ㄱㅊ(주)	2015.5.20. ~6.30.	600.21 (600)	25	9,047 (9,047)	AA																																

예술의전당

□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

- 예술의전당은 아래 [표 1]의 ①~⑤ 서예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5건의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5항**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누설 또는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나

*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안됨

표 1.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처리현황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금액(천원)	공사감독
			톤	건수		
①서예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ㄱ	2012.12.18. ~4.17.	323.77 (220)	15	8,829 (5,676)	FF
②음악당 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ㄱ(주) (운반,처리) (주)ㄱ(운반)	2012.11.2. ~2013.2.10.	732.93 (192.95)	32	18,783 (6,415)	FF
③음악당 로비하부공간 편의시설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ㄱ(주)	2013.5.6. ~12.31.	725.45 (770)	47	43,885 (34,980)	FF
④토월극장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ㄱ(주)(운반) (주)ㄱ(차량)	2011.10.20. ~2012.12.31.	3,955.53 (2,087)	210	103,425 (35,846)	GG
⑤오페라하우스 3층 로비확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ㄱ	2012.12.24. ~2013.2.28.	382.81 (370)	25	21,042 (19,072)	EE

* 토월극장 리모델링공사는 2012.1.1.이전 물량 포함됨

- ①의 경우 공사감독 FF은 2012. 12.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주)ㄱ FF에게 USB에 저장하여 전달하였고, 올바로 시스템에 사업장 등록 후 ID와 PW를 생성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②의 경우 공사감독 FF은 2012. 11.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ㄱ(주) GG에게 USB에 저장하여 전달하였고, 올바로 시스템에 사업장 등록 후 ID와 PW를 생성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③의 경우 공사감독 FF은 2013. 5.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ㄱ(주) GG에게 USB에 저장하여 전달하였고, 올바로 시스템에 사업장 등록 후 ID와 PW를 생성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④의 경우 공사감독 GG은 2011. 10.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ㄱ(주) HH에게 USB에 저장하여 전달하였고, 올바로 시스템에서 ID와 PW를 생성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⑤의 경우 공사감독 EE은 2012. 12.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주)ㄱ II에게 USB에 저장하여 전달하였고, 올바로 시스템에서 ID와 PW를 생성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소홀

- 예술의전당은 위 [표 1]의 ①~⑤ 서예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등 5건의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 마다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에도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 ①의 경우 공사감독 FF은 폐기물처리업체 (주)ㄱ에 부탁하여 총배출량 324톤(15건) 중 223톤(10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②의 경우 공사감독 FF은 폐기물처리업체 ㄱ(주)에 부탁하여 총배출량 733톤(32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③의 경우 공사감독 FF은 폐기물처리업체 ㄱ(주)에 부탁하여 총배출량 725톤(47건) 중 718톤(46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④의 경우 공사감독 GG은 폐기물처리업체 ㄱ(주) 직원 HH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1,671톤(99건) 중 1,625톤(96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⑤의 경우 공사감독 EE은 폐기물처리업체 (주)ㄱㄱㄱ 직원 II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383톤(25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폐기물처리 변경계획 신고 누락

- 예술의전당은 아래 [표 2]의 ①~③ 서예박물관 리모델링공사 등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1*에 따라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

표 2.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신고 총배출량 대비 변경 총배출량 비교

계약명	신고 총배출량(톤) (①)	변경 총배출량(톤) (②)	증가(톤) (②-①)	증가 비율(%) (②/①)	공사감독
①서예박물관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800	2,871	1,071	증 60	FF
②음악당 연결통로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93	733	540	증 380	FF
③토월극장 리모델링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87	3,955	1,868	증 90	GG

- ①의 경우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2015. 2. 9.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신고 당시 1,800톤에서 2,871톤으로 59%가 증가하였는데도 관할청에 변경신고를 누락하였음
 - ②의 경우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2012. 11. 1.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신고 당시 193톤에서 733톤으로 379%가 증가하였는데도 관할청에 변경신고를 누락하였음
 - ③의 경우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2011. 10. 25.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신고 당시 2,087톤에서 3,955톤으로 89%가 증가하였는데도 관할청에 변경신고를 누락하였음
- ⇒ **관련자 주의** : FF, GG, EE

한국콘텐츠진흥원

□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아래 [표]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사옥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5항**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누설 또는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나

*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안됨
 표.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처리현황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물량		준공(계약)금액(천원)	공사감독
			톤	건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사옥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가드	2013.3.29. ~2014.4.30.	310.68 (311)	15	9,513 (9,513)	JJ

- 공사감독 JJ은 2013. 8.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USB에 복사하여 건설사업관리단(CM)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체 (주)가드에게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소홀

-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위 [표]의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사옥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 마다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라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에도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함

- 공사감독 JJ은 폐기물 배출시 마다 배출 물량, 폐기물 종류 등을 건설사업관리자(CM)에게 보고를 받았으나, 폐기물처리업체 (주)기기에 부탁하여 총배출량 310톤(15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관련자 주의 : JJ 과장**

국민체육진흥공단

□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아래 [표 1]의 ①~⑩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공사 등 16건의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5항**에 따라 전자서명생성 정보를 누설 또는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나
 - *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안됨

표 1.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처리현황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준공(계약)금액(천원)	공사감독(공시관리관)
			톤	건수		
①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기리	(1차)2012.10.23. ~2013.12.4.	1,975.22 (1,975.22)	87	24,662 (24,662)	(KK)
		(2차)2014.5.23. ~2015.5.31.	509.99 (2,832.82)	24	6,371 (35,671)	(LL)
		소계	2,485.21 (4,808.04)	111	31,033 (60,333)	
② 유스호스텔 시설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기(주)(운반) (주)기리(처리)	2012.12.30. ~2013.4.30.	804.6 (1,023.2)	42	36,291 (41,388)	MM
③ 역도경기장 시설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기리	2013.7.11. ~11.15.	2,566.3 (2,569.4)	133	124,498 (124,498)	MM
④ 경륜훈련원 시설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기(주)(운반) (주)기리(처리)	2014.9.12. ~12.10.	278.61 (266.1)	16	15,657 (15,657)	MM
⑤ 벨로드롬 시설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기(주)(운반) (주)기리(처리)	2014.12.22. ~2015.3.30.	372.8 (346)	25	13,120 (13,120)	MM
⑥ 체조경기장 시설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기(주)(운반) (주)기리(처리)	2014.5.16. ~9.20.	290.9 (302)	19	13,191 (13,410)	MM
	(주)기리	2014.5.20. ~9.20.	238.2 (262.2)	28	10,663 (11,739)	
	(주)기리	2014.5.14. ~9.20.	16 (20)	6	4,945 (5,300)	
⑦ 올림픽공원 전력시설물 개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기(주)	2013.9.23. ~12.21.	320.1 (320)	15	5,632 (5,632)	NN
⑧ 올림픽수환경개선사업 및 통합관제시스템 구축관련 폐기물처리용역	기(주)	2014.1.1. ~6.30.	426.86 (426)	19	6,963 (6,995)	OO
⑨ 의정부지점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기(주)	2012.9.13. ~12.22.	159.63 (119.3)	13	6,500 (6,500)	PP
⑩ 길음지점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기리	2011.12.30. ~2012.4.7.	559.38 (548)	27	23,012 (23,012)	PP
⑪ 일산지점 환경개선 폐기물처리용역	(주)기리	2011.12.26. ~2012.4.23.	488.32 (484.8)	31	28,908 (28,908)	PP

⑫광명스피드돔 지정착석실 환경개선 폐기물처리용역	(주)ㄱㄱㄱㄱ	2015.3.2. ~5.30.	234.5 (217)	19	13,969 (13,969)	MM
⑬경정공원 우수관로 폐기물처리용역	(주)ㄱㄱㄱㄴ	2012.12.2. ~2013.3.28.	119.74 (110)	5	3,399 (3,399)	QQ
⑭경정공원 도로환경개선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ㄱㄱㄱㄷ	2013.11.12. ~2014.3.23.	2,805.42 (3,508.2)	142	83,077 (105,713)	QQ
⑮경정장 보행로 환경개선 공사폐기물처리용역	ㄱㄱㄱㄹ(주)	2014.11.12. ~12.23.	834.88 (787.1)	35	22,806 (22,806)	QQ
⑯한얼광장 및 만남의광장 시설환경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ㄱㄱㄱㅁ(주)	2014.12.23. ~2015.4.30.	3,105.4 (2,913.5)	131	82,889 (82,889)	RR
⑰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ㄱㄱㄱㅂ(주)	2012.3.2. ~4.20.	1,473.55 (2,006.9)	67	72,090 (72,726)	MM
⑱태권도 공연장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ㄱㄱㄱㅅ	2011.4.28. ~2012.6.15.	7,349.63 (4,125.99)	328	173,250 (130,494)	OO
⑲영광친환경대중골프장 폐기물처리용역	(주)ㄱㄱㄱㅇ	2010.11.22. ~2013.12.30.	2,334 (2,725)	112	56,780 (65,974)	KK

※ ⑲ 총 7,349.63톤 중 2012.1.1.부터 2012.6.30.까지 처리물량 및 처리건수는 14건 333.29톤임

- ①의 조성공사(1차) 경우 관리관 KK은 한국환경공단을 방문 올바로시스템에 배출사업장 신고 후 2013. 11.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주)ㄱㄱㄱ 직원에게 이메일로 공유하였고 ID와 PW를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으며
- ①의 조성공사(2차) 경우 관리관 LL은 2014. 12.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주)ㄱㄱㄱ 직원 SS에게 이메일로 공유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②의 경우 공사감독 MM은 2013. 1.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ㄱㅎ(주) 직원 HH에게 이메일로 공유하였고 ID와 PW를 구두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③의 경우 공사감독 MM은 2013. 7.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주)ㄱㄱㄱ 직원 TT에게 이메일로 공유하였고 ID와 PW를 구두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④의 경우 공사감독 MM은 2014. 9.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ㄱㄱㄱ(주) 직원 ZZ에게 이메일로 공유하였고 ID와 PW를 구두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⑤의 경우 공사감독 MM은 2014. 12.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ㄱㅎ(주) 직원 HH에게 이메일로 공유하였고 ID와 PW를 구두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⑥의 경우 공사감독 MM은 2014. 5.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ㄱㅎ(주) 직원 HH 및 (주)ㄱㄱㄱ 직원 AAA에게 이메일로 공유하였고 ID와 PW를 구두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⑦의 경우 공사감독 NN이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ㄱㄱㄱ(주)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고 판단됨
 - ※ 2014.7.1. NN 공사감독이 퇴사하여 공인인증서 유출경위(배출자-처리자 IP 일치) 등 확인이 불가함
- ⑧의 경우 공사감독 OO은 2014. 1.경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

기물처리업체 ㄱㄱㄷ(주) 직원 UU에게 이메일로 공유 하였고 ID와 PW를 구두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⑨의 경우 공사감독 PP은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로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장을 등록한 후 ID와 PW를 생성하여, 2012. 9.경 폐기물처리업체 ㄱㄱㄷ(주) 직원에게 이메일로 공인인증서 및 ID와 PW를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⑩의 경우 공사감독 PP은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로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장을 등록한 후 ID와 PW를 생성하여, 2012. 1.경 폐기물처리업체 (주)ㄱㄱㄷ 직원에게 이메일로 공인인증서 및 ID와 PW를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⑪의 경우 공사감독 PP은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로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장을 등록한 후 ID와 PW를 생성하여, 2012. 1.경 폐기물처리업체 (주)ㄱㄱㄷ 직원에게 이메일로 공인인증서 및 ID와 PW를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⑫의 경우 공사감독 MM은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로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장을 등록한 후 ID와 PW를 생성하여, 2015. 3.경 폐기물처리업체 (주)ㄱㄱㄷ VV에게 이메일로 공인인증서 제공하였고 ID와 PW를 구두로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⑬의 경우 공사감독 QQ은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로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장을 등록한 후 ID와 PW를 생성하여, 2013. 3. 26. 폐기물처리업체 (주)ㄱㄱㄷ WW에게 이메일로 공인인증서 제공하였고 ID와 PW를 구두로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⑭의 경우 공사감독 QQ은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장을 등록한 후 ID와 PW를 생성하여, 2013. 11.경 폐기물처리업체 (주)ㄱㄱㄷ XX에게 공인인증서를 USB저장하여 제공하였고 ID와 PW를 구두로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⑮의 경우 공사감독 QQ은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올바로시스템에 사업장을 등록한 후 ID와 PW를 생성하여, 2014. 11. 28. 폐기물처리업체 ㄱㄱㄷ(주) YY에게 이메일로 공인인증서 및 ID와 PW를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⑯의 경우 공사감독 RR이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ㄱㄱㄷ(주)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고 판단됨

※ 2016.1.23. RR 공사감독이 퇴사하여 공인인증서 유출경위(배출자-처리자 IP 일치) 등 확인이 불가함

※ 관련자 : KK 팀장, LL 주임, MM 과장, NN(퇴사), OO 과장, PP 팀장, QQ 대리, RR(퇴사)

□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소홀**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 [표 1] 의 ①~⑩ 태릉실내수영장 철거공사 등 15건의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 마다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에도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함

- ①의 조성공사(1차) 경우 공사감독 KK은 책임감리 용역업체인 (주) ΓΓΓ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폐기물처리를 관리·확인하도록 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체 (주)ΓΓΓ 직원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1,975.22톤(87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①의 조성공사(2차) 경우 공사감독 LL은 책임감리 용역업체인 (주) ΓΓΓ스종합건축사사무소에 폐기물처리를 관리·확인하도록 하였으며, 폐기물처리업체 (주)ΓΓΓ 직원 SS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509.99톤(24건) 중 448.21톤(21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나머지 61.78톤(3건)은 전자인계서 작성이 누락되었음
- ②의 경우 공사감독 MM은 폐기물처리업체 Γㅎ(주) 직원 HH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805톤(42건) 중 322톤(16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③의 경우 공사감독 MM은 폐기물처리업체 (주)ΓΓΓ 직원 TT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2,566톤(133건) 중 2,038톤(106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④의 경우 공사감독 MM은 폐기물처리업체 ΓΓΓ(주) 직원 ZZ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279톤(16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⑤의 경우 공사감독 MM은 폐기물처리업체 Γㅎ(주)직원 HH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372톤(25건) 중 344톤(22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⑥의 경우 공사감독 MM은 폐기물처리업체 기흥(주)직원 HH 부탁하여 총배출량 290톤(19건) 중 126톤(17건)과 (주)기흥 AA A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238톤(28건) 중 43톤(13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⑦의 경우 공사감독 NN은 폐기물처리업체 기흥(주)에 부탁하여 총배출량 320톤(15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추정)
- ⑧의 경우 공사감독 OO은 폐기물처리업체 기흥(주)직원 AAB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426.86톤(19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⑨의 경우 공사감독 PP은 폐기물처리업체 기흥(주) 직원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159.63톤(13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⑩의 경우 공사감독 PP은 폐기물처리업체 (주)기흥 직원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559.38톤(27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⑪의 경우 공사감독 PP은 폐기물처리업체 (주)기흥 직원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488.32톤(31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⑫의 경우 공사감독 MM은 폐기물처리업체 (주)기흥 AAC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234.5톤(19건) 중 211톤(18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⑬의 경우 공사감독 QQ은 폐기물처리업체 (주)기흥 AAC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119.74톤(5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⑭의 경우 공사감독 QQ은 폐기물처리업체 (주)기흥 XX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2,805.42톤(142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⑮의 경우 공사감독 QQ은 폐기물처리업체 기흥(주) YY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834.88톤(35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⑩의 경우 공사감독 RR이 폐기물처리업체 ㄱㄱ츠(주)에 부탁하여 총배출량 3,105.4톤(131건) 중 2,295톤(97건)의 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판단됨

※ 관련자 : KK 팀장, LL 주임, MM 과장, NN(퇴사), OO 과장, PP 팀장, QQ 대리, RR(퇴사)

□ 폐기물 처리비용 지급 부적정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 [표 1] 의 ① 거창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2차)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은 올바로시스템의 인계내역,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준공처리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 공사관리관 LL은 공사감독 업무대행 책임감리업체인 (주)ㄱㄱ스 종합건축사무소에서 제출한 준공서류를 일괄 제출받아 처리하면서

- 올바로시스템 인계내역과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ㄱㄱ에서 제출한 준공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별표 1] 과 같이 인계일자,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위탁량, 폐기물명, 차량번호 등을 조작한 위·변조내역을 근거로 24건 509.99톤의 폐기물 처리비용(약 6,371천 원)을 지급하였음

※ 관련자 : LL 주임, 관련업체 : (주)ㄱㄱ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 [표 1] ⑨의 영광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은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준공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 공사관리관 KK 팀장은 감리용역 업체인 ㄱㄱ츠(책임감리원 AA D)에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폐기물처리업체인 (주)ㄱㄱ의 계량증명서를 인정하여 112건 2,334톤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하여 전자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 공사관리관 AAE은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계량증명서의 배출일자는 실제 배출일자에 입력하지 못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날 한 번에 입력하면서 배출일자가 오류가 발생한 것이며, 배출일자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책임감리원이 건설폐기물 처리 완료계를 검토하여 공문을 제출하면 인정하고 준공처리하였다고 진술함

- 폐기물 배출장소와 폐기물처리업체 (주)ㄱㄱ(전남 순천시)간 폐기물 운반차량의 왕복 이동거리(288km)를 근거(다음지도)로 운반시간이 3시간 30분 정도(폐기물 상하차 시간 제외) 소요되어, 아래 [별표 2] 과 같이 (주)ㄱㄱ에서 제출한 계량증명서의 864.77톤(42건)의 폐기물 운반차량 왕복 운반시간은 3시간 30분 이내로 물리적으로 부족한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아래 [표 2] 와 같이 폐기물 처리비용(22,400천 원)을 지급하였음

표 2. 미확인 폐기물 처리비용 산출내역

(단위 : 원, 톤)

구분	폐기물종류	물량(톤)	단가(원)	금액(원)
폐기물 처리비	혼합폐기물	45.55	59,604	2,714,962
	폐콘크리트	819.22	17,040	13,959,508
	소계	864.77		16,674,470
폐기물 운반비	혼합폐기물	45.55	4,267	194,361
	폐콘크리트	819.22	4,267	3,495,611
	소계	864.77		3,689,972
계				20,364,442
부가가치세				2,036,444
합계				22,400,886

※ 관련자 : KK 팀장, 관련업체 : (주)ㄱㄱㄱㅇ

□ 폐기물처리업체 미승인 운반차량 운행

○ (주)ㄱㄱㅇ은 위 [표 1] 의 ① 거창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공사(1차)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운반차량은 배출현장의 시군구 허가를 득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나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운반차량에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유효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2012. 10. 23.부터 2013. 12. 4.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면서 아래 [표 3] 과 같이 경남06로**** 차량 등 4대 20건의 미승인 운반차량을 운행하였음

표 3. 미등록 불법차량 이용 현황

순번	배출일자	차량번호	건수	비고
1	2013.12.3.	경남06로****	1	
2		경남06도****	1	
3		경남06도****	4	
4		경남06도****	4	
5	2015.12.4.	경남06로****	1	
6		경남06도****	1	
7		경남06도****	4	
8		경남06도****	4	
소계		4대	20	

○ ㄱㄱㅇ(주)은 위 [표 1] 의 ⑰ 테니스장 시설개선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운반차량은 배출현장의 시군구 허가를 득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나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운반차량에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유효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2012. 3. 12. 폐기물을 운반하면서 충남06도5577 차량 1대 1건의 미승인 운반차량을 운행하였음

※ 관련업체 : (주)ㄱㄱㅇ, ㄱㄱㅇ(주)

□ 폐기물처리 변경계획 신고 누락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위 [표 1] 의 ⑱ 태권도 공연장 건립공사 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1*에 따라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를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여야함

- 공사감독 OO은 건설폐기물 총배출량이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신고 당시 4,125.99톤에서 6,939.74톤으로 68%가 증가하였는데도 관할청에 변경신고를 누락하였음

※ 관련자 : OO 과장

⇒ 관련자 엄중경고 : LL 주임, KK 팀장

관련자 주의 : MM 과장, NN(2014.7.1.퇴사), OO 과장, PP 팀장, QQ, R R(2016.1.23. 퇴사)

부적정 지급 폐기물 처리비용(2건, 28,771천 원) 환수 및 관련업체 위반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주)기기리, (주)기기기오, 기기기카(주)

□ 공인인증서 불법 유출

- 대한체육회는 아래 [표 1] 의 ①~③ 실내수영장 철거공사 등 3건의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전자서명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5항**에 따라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누설 또는 대여가 금지되어 있으나

*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됨

**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안됨

표 1. 건설폐기물처리 용역계약 및 처리현황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기간	처리(계약)물량		처리(계약)금액(천원)	공사감독(업무담당)
			톤	건수		
①태릉실내수영장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주)기기리	2013.3.31. ~8.2.	2,790 (3,514)	114	91,396 (96,560)	AAF (AAG)
②태릉 실내빙상장 재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주)기기리	2013.7.29. ~9.17.	228.19 (224)	10	7,956 (7,956)	AAF (AAG)
③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기기기	2014.7.1. ~2017.9.30.	7,215.65 (15,181)	313	진행중 (272,435)	AAH
	(주)기기기표	2014.7.1. ~2017.9.30.	91.89 (93)	7	진행중 (21,585)	
④태릉국제스케이트장 리모델링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주)기기리	2012.9.25. ~12.20.	3,507.34 (3,355)	157	87,825 (87,825)	AAF

※ ③ 폐기물 처리물량 및 처리건수는 2015.3.30. 기준임

- ①~②의 경우 업무담당 AAG은 2013. 6. 14.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하여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2013. 7. 24. 공인인증서

대한체육회

를 폐기물처리업체 (주)기기 직원에게 제공하였고 ID와 PW를 구두로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③의 경우 업무담당 AAH은 한국환경공단을 방문하여 기관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2014. 7. 9.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기기(주) 직원 AAH에게 제공하였고 ID와 PW를 구두로 전달하였으며, 또한 2014. 7. 15. 공인인증서를 폐기물처리업체 (주)기기 직원 AAJ에게 제공하였고 ID와 PW를 구두로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였음

※ 관련자 : AAG, AAH

□ 배출자 확인의무 등 직무소홀

- 대한체육회는 위 [표 1] 의 ①~③ 실내수영장 철거공사 등 3건의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할 때 마다 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야 함에도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함

- ①의 경우 공사감독 AAF은 폐기물처리업체 (주)기기에 부탁하여 총배출량 2,790톤(114건) 중 143톤(8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였음
- ②의 경우 공사감독 AAF은 폐기물처리업체 (주)기기에 부탁하여 총배출량 228톤(10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였음
- ③의 경우 공사감독 AAH은 기술제안입찰공사 입찰안내서(2013.9.)에 건설폐기물 처리비는 시공사 부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안내서(2013.9.) 업무범위에 폐기물처리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건설사업관리단 및 시공사에서 대한체육회를 대신하여 폐기물처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체 기기(주) 및 (주)기기에서 총배출량 7,289톤(335건) 중 7,267톤(332건)*의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였음

*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폐기물의 종류, 물량, 등록차량 등에 대하여 육안으로 확인은 하였으나, 건설폐기물 반출 후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폐기물 계량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기성 청구시 폐기물처리업체로부터 계량증명서를 일괄하여 제출받아 건설폐기물 물량을 확인하였음

- ④의 경우 공사감독 AAF은 폐기물처리 감독권한이 없는 공사감

리용역 (주)기기종합건축사무소에게 폐기물처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폐기물 배출시 폐기물 종류, 차량번호, 배출량 등 확인하지 않았으며, 폐기물처리업체 (주)기기니 직원 AAAA에게 부탁하여 총배출량 3,507.34톤(157건)을 휴대전화를 이용 배출사업장을 등록한 후 폐기물 인계에 관한 내용을 배출자를 대신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인계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관련자 : AAG, AAH, AAF

□ 폐기물처리 설계 변경계약 미이행

○ 대한체육회는 위 [표 1] 의 ① 태릉실내수영장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용역 과정에서 신규비목 등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계약*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3항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

- 폐기물처리업체인 (주)기기니에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실정보고서(우리13-042, 2013.6.26.)를 제출하여 대한체육회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였고, 공사감독 AAF은 아래 [표 2] 와 같이 (주)기기니에 설계변경을 승인*하여 통보(선수촌관리팀-2745, 2013.6.28.)하였으나

* 설계변경 승인 당시 계약담당 AAK 차장의 협조 결재를 받음

- 계약담당 AAK 차장은 신규 비목(소각폐기물 160톤) 등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아래 [표 2] 와 같이 계약금액이 5,164천원이 감액되어 설계변경 계약 체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신규 비목인 소각폐기물 160톤 약 18,539천 원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

표 2.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 승인 현황

(단위 : 원, 톤)

구분	폐기물종류	당초			변경			증(감)액(원)	증감사유
		물량(톤)	단가(원)	금액(원)	물량(톤)	단가(원)	금액(원)		
폐사채 처리분	건축폐사채	452	22,768	10,291,136	405	22,768	9,221,040	감 1,070,096	물량감소
	소각폐기물				160	105,338	16,854,080	증 16,854,080	신규비목
	소계	452		10,291,136	565	105,338	26,075,120	증 15,783,984	
폐기물 조정분	페콘크리트	3,033	14,140	42,886,620	2,123.47	14,140	30,025,866	감 12,860,754	물량감소
	수집·운반비	3,514	7,820	27,479,480	2,717.47	7,820	21,250,615	감 6,228,865	물량감소
	소계	6,547		70,366,100	4,840.94		51,276,481	감 19,089,619	
계		6,999		80,366,100	5,405.94		77,351,601	감 3,305,635	
부가가치세 등				15,902,964			14,044,399	감 1,858,565	
합계				96,560,200			91,396,000	감 5,164,200	

※ 관련자 : AAK

□ 폐기물 처리비용 지급 부적정

- 대한체육회는 위 [표 1] 의 ① 태릉실내수영장 철거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과 관련하여, 올바로시스템 인계내역, 계량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준공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 공사감독 AAF은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등 총 2,717톤 중 신규 비목인 소각폐기물 160톤을 설계 변경하여 처리하면서, 공사감독 AAF이 확인한 배출 폐기물에 대하여 (주)ㄱㄱㄴ에게 태릉선수촌 사무실에서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라고 하였으나, (주)ㄱㄱㄴ은 공사감독 AAF이 확인하지 않는 소각폐기물 총 160톤(9건) 중 143톤(8건)을 (주)ㄱㄱㄴ 사무실에서 임의로 입력하였으며
 - 공사감독 AAF은 (주)ㄱㄱㄴ이 제출한 준공서류를 근거로 준공처리 *하면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에 소각처리 내용이 없는데도** 소각폐기물 160톤(9건)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비용 약 18,539천 원을 지급하였음
 - * 공사감독 AAF은 (주)ㄱㄱㄴ에서 임의로 입력한 폐기물이 있는 것을 모르고 준공처리 하였다고 진술함
 - ** 소각폐기물(지봉재) 중간처리 시 (주)ㄱㄱㄴ과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한 소각업체인 이가환경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건축폐기물 관리대장이 없다고 진술함

※ 관련자 : AAF, 관련업체 : (주)ㄱㄱㄴ

□ 폐기물처리업체 미승인 운반차량 운행

- ㄱㄱㄱㄷ(주)은 위 [표 1] 의 ③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공사 폐기물처리용역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운반차량은 배출현장의 시군구 허가를 득한 차량을 이용하여 운반하여야 하나
 - *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운반차량에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유효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2012. 3. 12.부터 2015. 6. 6.까지 폐기물을 운반하면서 아래 [표 3] 과 같이 대전06라**** 차량 3대 8건의 미승인 운반차량을 운행하였음

표 3. 미등록 불법차량 이용 현황

순번	배출일자	차량번호	건수	비고
1	2014.7.10.	대전06라****	4	
2	2015.6. 6.	충북06노****	2	
3	"	충북06노****	2	
계		3대	8	

※ 관련업체 : ㄱㄱㄱㄷ(주)

⇒ 관련자 임중경고 : AAF 과장

관련자 주의 : AAG 주임, AAH 과장, AAK 차장

부적정 지급 폐기물 처리비용(18,539천 원) 환수 및 관련업체 위반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주)ㄱㄱㄴ, ㄱㄱㄱㄷ(주)